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2

심의일자	2017. 9. 15.(금)		
사업명/신청위치	문래동 기업형임대주택건설사업 / 영등포구 문래동6가 21번지		
의결번호	2017-구조안전 13-1	심의결과	조건부의결
<p>[심의 내용] 구조안전 심의</p> <p>■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,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■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허가 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</p> <p>< 구조안전 분야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용 파일의 지지력이 크므로 파일 내력($R_a = 1900\text{KN/EA}$)을 검증하고 사용하기 바람.(근거 첨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공시 지지력에 대해서도 철저히 품질관리하기 바람. ○ 고강도 철근 사용시 이음부의 철저히 품질관리가 요구되므로 검토 바람. ○ 지하 벽체 중 개구부가 있는 경우 기둥의 강성으로 고려하기 바람. ○ 지하외벽은 힘의 흐름을 고려하여 일방향(좌우 또는 상하) 설계를 반영하기 바람. ○ 중공슬래브는 일반적인 공법이 아니므로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방법(분할 타설)을 도면에 명기하고, 사용 전 철저한 검증과 시공시 품질관리에 유의하기 바람. ○ 구조도면에 내진 배근 상세에 대해 명확히 표기하기 바람. ○ 전이보의 철근배근 및 시공(콘크리트 타설 방법)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도면에 명기하기 바람. ○ 지하3층 지하주차장 바닥(슬래브 두께 30cm) 설계시 영구 배수 공법을 적용하였으나, 집중 호우시 강제 배수량보다 유입수의 양이 많을 경우 일시적인 부력에 의해 바닥슬래브의 배부름 현상이나 기둥·보 단부가 파괴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므로 당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슬래브 설계를 재검토하기 바람.(내수압 슬래브 두께 30cm 구간만 해당)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- 계속 -</p>			

2017. 09. 15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2/2

심의일자	2017. 9. 15.(금)		
사업명/신청위치	문래동 기업형임대주택건설사업 / 영등포구 문래동6가 21번지		
의결번호	2017-구조안전 13-1	심의결과	조건부의결
〔심의 내용〕 구조안전 심의			
< 구조안전 분야 >(계속)			
○ 구조계산서상 콘크리트구조기준 2007,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2003, IBC, ACI 318을 참고한다고 되었으나, 실제 적용한 기준만 기술하기 바람.			
○ 기둥 C11(600×900)은 주근 HD22로 2단으로 배근되어 있으나, 시공성을 고려하여 굵은 철근으로 1단으로 배근하기 바람.			
○ 지하벽체에서 전단보강근은 $d/2$ 이하여야 하므로 다시 검토하기 바람. - BW1, RaBW1, RaBW2 thk500, 전단보강근 D10@300(수직간격)×200			
○ 기초설계가 Best USD12로 되어 있으나, 기준과는 상이한 사항이 있으므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Punching Shear를 다시 계산하기 바람.			
○ 101, 102, 103동 4호이상 조합의 공동주택을 시공 편의성을 위해 세대간 간벽에 개구부를 설치하기 바람.			
○ TRANSFER GIRDER를 지지하는 기둥은 기준에 적합하게 띠철근을 배근하기 바람.(건축구조기준 0520.5.4.5.~0520.5.4.6)			
○ 기초구조 배근 thk 1200mm에 기본 배근 HD22@250(B,#)은 기초의 최소배근에 부족하므로 재검토하기 바람.			
< 기타사항 >			
○ 지하층 외곽에 요철이 있는 부분은 시공이나 토목 흠막이 안전상 개선하기 바람.			
○ 램프 코너 회전부분은 사용시의 안전을 고려하여 좀 더 완만하게 해서 계획하기 바람. 끝.			

2017. 09. 15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